

▶ 연구윤리 관련 규정

세계선교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의 학술지인『선교와 신학』과 관련하여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연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세계선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학교 연구지원처 및 전문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연구원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란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명칭) 위원회 명칭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2명의 당연직 위원과 3명 이상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원장과 연구지원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연구원 총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원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권한)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해당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
- ② 저자의 향후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③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

- ④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행위 사실 통보
- 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장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원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연구원 및 연구지원기관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원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연구원 및 연구지원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8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원에 있다.
- ②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연구원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진실성 검증 시효)

- ①제보의 접수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만 5년을 경과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5년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진실성 검증 원칙)

- ①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원과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연구원의 원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진실성 검증 절차)

-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연구원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예비조사

제22조(기간 및 방법)

- ①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6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예비조사는 연구지원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6조 제5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6장 본조사 및 권리보호

제2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까지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7장 판정 및 재심의

제30조(판정)

①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32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제5조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첩하여 징계에 관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3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원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35조(경비)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윤리 검증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연구원 총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연구원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년 6월 1일

시행: 2007년 8월 1일

개정: 2008년 5월 2일

개정: 2010년 3월 16일

개정: 2014년 3월 6일